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7. 19(목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7. 24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7. 24(화)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공무원 국내여비(관외출장)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관외출장자의 숙박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고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형식을 정비
- 관외출장여비 중 숙박비 인상(안 제4조 【별표】 국내여비지급표)
 - 관외출장자 숙박비 부담해소 및 사기진작, 업무능률제고 등을 고려하여 숙박비(1박당)를 30,000원에서 40,000원으로 상향 조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2012. 1. 6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(행정안전부)에 따라 여비지급 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관외출장여비 중 숙박비를 3만원에서 상한액인 4만원으로 상향

하고

- 기타 조문을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정비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중 숙박비 지급단가의 상한액 범위 안에서 관외출장자의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